허용된 유급 병가 사용 관련 직원 증명

뉴욕 시 유급 병가법(Paid Sick Leave Law 또는 Earned Sick Time Act)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모든 기간의 병가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연속 3 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*에만* 면허가 있는 의료제공자가 작성한 의료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직원은 다음의 사유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1. *정신적인 질병 또는 정신적인 질병의 의학적 진단, 처치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(직원 또는 직원 가족)*
2. *신체적인 질병 또는 신체적인 질병의 의학적 진단, 처치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(직원 또는 직원 가족)*
3. *상해 또는 상해에 대한 의학적 진단, 처치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(직원 또는 직원 가족)*
4. *건강상태 또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, 처치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(직원 또는 직원 가족)*
5. *예방 차원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(직원 또는 직원 가족)*
6. *공중 보건상 응급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명령에 따라 직원의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*
7. *공중 보건상 응급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폐쇄되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*

본인 _____(정자체 또는 타이핑으로 이름 기입)은 다음 날짜에 상기 기재된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하여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월	일	년

본인은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

_____ 직원 서명

_____ 직원 직급

_____ 서명 날짜

_____ 직원 ID 번호

고용주:	
근무지	
고용주 주소(근무지와 다를 경우):	